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7684
등록일자	2016.2.26.
결재일자	2016.2.2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복지정책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	
이상은	조춘식	김구연	02/26 김효길		
협조자					

## 『강남복지재단』 정관변경 승인계획

### 관련근거

- 서울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-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34조(정관의 변경)

### 강남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완료

- 일 시 : 2016. 1.22.(금) 16:00
- 장 소 :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
- 참석인원 : 이사 10명(재적이사 13명 중 10명), 감사 2명

### 정관변경 내용

- 제12조(업무보고)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출기한  
9월말까지 ⇨ 10월말까지
- 제17조 (임원의 선임) “구청장이 임명한다” 조항 신설
- 제24조 (이사회회의 소집) 정기이사회 개최기한  
회계연도 1월전까지 ⇨ 회계연도 2월전까지
- 제29조 (서면결의 금지) 서면결의 조항 삭제
- 별지 『재산목록』
  - 기본재산 취득원인 용어 변경  
민간후원금(기본재산 적립용) ⇨ 강남구출연금
  - 기본재산 평가액 증액 변경  
2,408,150,000원 ⇨ 4,020,750,000원

2016. 1. .

강 남 구  
(복 지 정 책 과)

# 【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강남복지재단 정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 필요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예산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 : 강남구민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 [계속 : ] [신규 : 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 ○ 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○ 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/table> <p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○ 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)	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	-----	( 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 )	⑤ 시장조사	-----	( 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○ 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○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○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회계법인과 합동 점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『강남복지재단』 정관변경 승인계획

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및 관련 법령에 적합토록 정관변경을 승인하여 합리적으로 강남복지재단을 운영코자 함

## I

### 관련근거

- 서울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2.27.>
-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34조(정관의 변경)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II

### 재단 승인요구(안)

- 강남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완료
  - 일 시 : 2016. 1.22.(금) 16:00
  - 장 소 :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
  - 참석인원 : 이사 10명(재적이사 13명 중 10명), 감사 2명
  - 안건의결 :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의 8건
  - 의결정족 : 재적이사 2/3이상 찬성
  - 안건처리 : 참석이사 전원 찬성

## □ 정관변경 내용 및 사유

해당조항	변경내용	변경사유
제12조 (업무보고)	○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출기한 9월말까지 ⇨ 10월말까지	○ 업무추진이 원활하도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
제17조 (임원의 선임)	○ “구청장이 임명한다” 조항 신설	○ 임원의 선출 방법 추가 기재
제24조 (이사회회의 소집)	○ 정기이사회 개최기한 회계연도 1월전까지 ⇨ 회계연도 2월전까지	○ 정관12조의 변경과 일치하도록 이사회 개최기한 조정
제29조 (서면결의 금지)	○ 서면결의 조항 삭제	○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서면결의 조항 삭제
별지 『재산목록』	○ 기본재산 취득원인 용어 변경 : 민간후원금 (기본재산 적립용) ⇨ 강남구출연금 (민간후원금 성격)  ○ 기본재산 평가액 증액 변경 : 2,408,150,000원 ⇨ 4,020,750,000원	○ 재단이 기부금지정단체로 등록 (2015.3.31.字)되기 전에는 강남구청에서 민간후원금(기본재산 적립용)을 받아 세외수입처리하였으며, 세외수입액만큼 구예산으로 편성한 후, 출연금으로 재단에 교부하는 절차를 거쳤음  ○ 재원은 민간후원금 성격이나 결과적으로 강남구에서 출연금으로 재단에 교부하였기에 별지 재산목록에 출연금으로 변경 기재하고 그 출연금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비고란에 민간후원금으로 기재토록 변경함(서울시 구두안내)

## □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12조(업무보고)</b> ①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<u>9월말까지</u>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구청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</p>	<p><b>제12조(업무보고)</b> ①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<u>10월말까지</u>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구청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17조(임원의 선임)</b>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&lt;신설&gt;</p>	<p><b>제17조(임원의 선임)</b>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<u>구청장이 임명한다.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24조(이사회의 소집)</b>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<u>1월전까지</u> 연1회 소집한다.</p>	<p><b>제24조(이사회의 소집)</b>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<u>2월전까지</u> 연1회 소집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29조(서면결의 금지)</b> ①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<u>단,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29조(서면결의 금지)</b> ①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&lt;<u>단서조항 삭제</u>&gt;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[별지]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재산구분</th> <th>취득원인</th> <th>평가액(원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현금</td> <td>강남구출연금</td> <td>2,000,000,000</td> <td>삭제</td> </tr> <tr> <td>현금</td> <td><u>민간후원금</u></td> <td>408,150,000</td> <td><u>기본재산</u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&lt;신설&gt;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&lt;신설&gt;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</td> <td><u>2,408,150,000</u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재산구분	취득원인	평가액(원)	비고	현금	강남구출연금	2,000,000,000	삭제	현금	<u>민간후원금</u>	408,150,000	<u>기본재산</u>		<신설>				<신설>			합 계		<u>2,408,150,000</u>		<p><b>[별지]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재산구분</th> <th>취득원인</th> <th>평가액(원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현금</td> <td>강남구출연금</td> <td>2,000,000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현금</td> <td><u>강남구출연금</u></td> <td>408,150,000</td> <td><u>민간후원금</u></td> </tr> <tr> <td>현금</td> <td><u>강남구출연금</u></td> <td><u>1,251,600,000</u></td> <td><u>민간후원금</u></td> </tr> <tr> <td>현금</td> <td><u>민간후원금</u></td> <td><u>361,000,000</u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합 계</td> <td></td> <td><u>4,020,750,000</u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재산구분	취득원인	평가액(원)	비고	현금	강남구출연금	2,000,000,000		현금	<u>강남구출연금</u>	408,150,000	<u>민간후원금</u>	현금	<u>강남구출연금</u>	<u>1,251,600,000</u>	<u>민간후원금</u>	현금	<u>민간후원금</u>	<u>361,000,000</u>		합 계		<u>4,020,750,000</u>	
재산구분	취득원인	평가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	강남구출연금	2,000,000,000	삭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	<u>민간후원금</u>	408,150,000	<u>기본재산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<u>2,408,150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산구분	취득원인	평가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	강남구출연금	2,00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	<u>강남구출연금</u>	408,150,000	<u>민간후원금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	<u>강남구출연금</u>	<u>1,251,600,000</u>	<u>민간후원금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	<u>민간후원금</u>	<u>361,000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<u>4,020,750,00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 Ⅲ

## 재단요구안 검토 결과

### 정관조문

- 제12조(업무보고) ..... 적정(승인)
- 제17조(임원의 선임) ..... 적정(승인)
- 제24조(이사회회의 소집) ..... 적정(승인)
- 제29조(서면결의 금지) ..... 적정(승인)

### 별지 기본재산 ..... 적정(승인)

### Ⅳ

## 행정사항

-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 결과 통보 ..... 복지정책과
- 정관변경에 따른 서울시 승인요청 ..... 강남복지재단

붙임 강남복지재단 정관 1부.